
VI. 결론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채택되어 운영되고 있는 잔여시장제도는 공동인수제도이다. 현 공동인수제도는 자동차보험이 사회보험의 하나로 인식이 강하던 시기인 1987년에 만들어졌다. 임의담보임에도 소비자가 원한다면 공동인수제도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제도이다.

1987년 이후 자동차보험제도는 1990년대 요율자유화(범위요율제 등)가 진행되었고, 2000년대 초 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자유화를 거쳐 현재는 상품 및 요율의 완전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즉, 현재 자동차보험제도가 놓여 있는 상황은 공동인수제도가 처음 도입되던 당시 상황과 많은 차이가 있다. 과거에는 자동차보험이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인식되었지만, 현재는 일반 보험상품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공동인수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난 현재, 현 공동인수제도가 자유화 시대에 부합하게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없는지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 공동인수제도는 1987년 이후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싸고 되풀이되는 갈등의 역사와 함께 크고 작은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1987년 당시 만들어졌던 공동인수제도의 큰 틀이 바뀌지는 않았다. 그리고 최근, 2017년에는 공동인수제도의 틀 내에서 의무가입 담보를 기존 배상책임(대인II)에서 전담보로 확대하는 등의 큰 제도 변화가 있었다. 동 제도 변경은 조금 비싼 보험료일지라도 자동차보험 전담보를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응답하는 것이었다. 공동인수대상 담보를 전담보로 확대함에 따라 공동인수물건 손해율 증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실적 손해율을 반영한 요율조정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등 보완장치도 마련되었다. 이러한 최근 공동인수물건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 공동인수물건이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

이 해소되기는 요원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인수물건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현 공동인수물건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현 공동인수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자동차보험 손해를 변화와 공동인수물건 규모의 증가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즉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증가하면 공동인수물건 규모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는 현 공동인수물건제도의 의무가입대상이 전담보로 확대됨으로써 보험회사가 담보 수준에서 공동인수대상자의 인수거절을 할 수 없게 된 효과가 손해율에 반영되어 공동인수물건의 손해율이 증가될 개연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당국에서는 실적 손해율에 부합하게 요율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요율산출 과정에서 사회여론의 영향을 받을 소지가 여전하기 때문에 전담보 확대에 따른 손해율 증가 현상이 나타날 여지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는 책임보험(대인배상 I)을 공동인수로 가입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는 자배법 때문에 책임보험에서는 보험료 이전효과(안전한 차의 소유자가 위험한 차의 소유자의 보험료를 일부 부담하는 현상)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는 공동인수물건에 적용되는 보험료가 일반물건 보험료보다 저렴한 현상, 즉 보험료 역전현상이 발생할 개연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3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는 일반물건 보험료 산출 시 고려하는 요소, 즉 요율요소를 현행보다 확대함으로써 일반물건 보험에서 위험한 물건을 대부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일반물건 요율요소에 보험회사의 인수기준을 요율요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인수기준에 부합한 요율요소 적용은 현재 공동인수물건으로 간주되는 많은 계약이 일반물건 시장에서 흡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의무보험도 공동인수제도가 적용되도록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의무보험에 대하여 공동인수를 할 수 있는 조건에서 '요율산출기관이 정하는 기준' 부분을 삭제하고 공동인수물건으로 체결된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자배법의 인수거절 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는 해외사례(미국)의 잔여시장제도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위험도가 높

은 계약만을 인수하는 회사(또는 공적회사)를 설립하자는 제안이다. 동 회사 설립과 함께 현 공동인수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동 회사의 요율제도는 현행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요율제도와 다르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 회사가 설립 되면 공동인수제도가 없어지고, 동 회사는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위험도가 높은 계약을 놓고 기존 보험회사와 경쟁을 하므로 공동인수물건 보험료가 일반물건 보험료보다 낮은 현상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공동인수물건 대상담보를 전담보로 확대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공동인수물건 손해를 악화현상 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동 회사가 위험도에 부합한 보험료로 위험한 계약을 전담보 등으로 인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공동인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그리고 해외사례(미국) 연구를 통해서 현 잔여시장제도의 향후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러 물리적 한계 때문에 기술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해외사례가 미국에 국한된 점은 본 연구의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아무쪼록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강기훈·기승도(2011), 「선형혼합효과모형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사고유형별 손해액 탄력성 분석」, 『보험금융연구』
- 보험개발원(2017), 『자동차보험 공동인수계약 신고서』
_____ (2017. 12), 『자동차보험 공동인수계약 요율서』
_____ (2009~2016), 『월말보고서』
_____ (1997), 『자동차보험 변천사』
_____ (1996), 『세계 주요국의 자동차보험(미국·일본편)』
- 이일영(1992), 「자동차보험 특정물건 공동인수제도 개선방안」, 『보험금융연구』
- American Insurance Association(2004), “Automobile Insurance Laws”, AIA Publication
- Bouzouita, R. & V. L. Bajtelsmit(1997), “The Impact of Rate Regulation on the Residual Market for Automobile Insurance”, *The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
- Edward Vonesh, Vernon M. Chinchilli(1996), *Linear and Nonlinear Models for the analysis of Repeated Measures*, CRC Press
- Elilehrer(2008), “North Carolina’s Unfair Auto Insurance System”, John Locke foundation
- Grace, Klein and Phillips(2002), “Auto Insurance Reform: Salvation in South Carolina”, AEI-Brookings Joint center for Regulatory Studies
- Harrington, Scott E.(1984), “The Impact of Rate Regulation on Prices and Underwriting Results in the Property-Liability Insurance Industry: A Survey”,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 José C. Pinheiro, Douglas Bates(2000), “Mixed-Effects Models in S and S-PLUS”, Springer

Kenneth S. Abraham(2005), *Insurance Law AND Regulation-cases and marterials*,
Foundation Press

Martin F. Grace, Robert W. Klein, Sharon Tennyson(2013), “The Effects of
Regulatory Reforms in the South Carolina Auto Insurance Market”,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

Searle. S. R., Casella, G. and McCulloch, C. E.(1992), “Variance Components”, John
Wiley&Sons

Scott E Harrington, S. Travis Pritchett(1990), “Automobile Insurance Reform in
South Carolina”,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

III(2018. 4), “Facts+Statistics: Uninsured mortorists”

국회, <http://www.assembly.go.kr>

뉴욕주 금융서비스부, <https://www.dfs.ny.gov>

메릴랜드주 자동차보험, <https://www.mymarylandauto.com>

보험정보연구원, <https://www.iii.org/>

밸류펄링 홈페이지, <https://www.valuepenguin.com/>

플로리다주 공동인수협회, <http://www.fajua.org/>

DMV.ORG 홈페이지, <https://www.dmv.org/>